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연구원 라급) 근로자로 근무할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격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최종합격자 * 개별문자발송

응시분야	응시분야	응시번호	비고
공무직(연구원 라급)	석조 분석	20240450501	
공무직(연구원 라급)	도토기 분석	2024045030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및 방법 : 2024. 10. 4.(금) ~ 10. 8.(화)까지 보존과학실로 제출

-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 1부(상세)
 -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2년 이내 건강검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③ 반명함 사진(3×4) 이미지 파일(jpg) ※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2매 제출
 - ④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⑤ 통장사본 1부(급여지급용 계좌)
 -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⑧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 ⑨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붙임 1] 참조
※ [붙임 2] 참조
※ [붙임 3] 참조
※ [붙임 4] 참조

공지사항

- 합격통부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 042-860-9063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 반환 청구기간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합니다. 단,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하며(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4. 10. 2.(수) ~ 10. 15.(화)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6]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붙임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

4. 부패방지권익위원회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채용방법 공 개 경쟁 채용	채용직위(직급) 연구원 라급
	채용사유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붙임 3]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기간제 · 파견 ·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고용노동부)」과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18.11.7.)」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5.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년 월 일 부터 근무를 시작(또는 시작 예정)하였다.

2-1.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의 경로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취업하였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2. 본인은 () 사유로 월 일 이후 입사하였다.

<< 작성예시 >>

-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
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

3.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촌 이내의 관계로, ()에 근무 중인 (성명 :)이다.

3-1. (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 · 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확인자 : (서명/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① 수집 · 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 · 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입사방식, 국가유산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원회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 · 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u>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u>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원자

(서명)

년 월 일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